

알기 쉬운 생활법률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

Question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Answer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는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까지 확대하여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관련절차

Question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관련절차에 알고 싶습니다.

Answer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이나 전국 검찰청 청사안에 있는 공단 분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1) 법률구조 신청서
- (2) 주민등록 등본
- (3)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4)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금지 방법

Question

저는 변화한 시장가에서 10여 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 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 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 년 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 즉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나 다만,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같은 법 제23조 제4항),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후단). 즉, 상호 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利點)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상호의 등기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위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9조,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8조 제3항 제1호).